

『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0월 11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0월 17일

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채 동 익

나. 제안이유

- 국내·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과 경상북도조례 및 관련법령제도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지원기준 등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전문적인 투자유치자문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(안 제4조)
-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월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, 기업당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함(안 제12조, 제13조)
-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함(안 제19조, 제20조)
- 국내기업의 입지보조금등 현금지원을 투자금액의 20%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함(안 제21조)

- 국내기업의 본사 이전보조금과 공장 이전보조금 지원을 기업당 최고 2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함(안 제22조)
-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및 외국인투자 기업 각종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조항 신설(안 제23조의2, 제30조의2)
- 기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정비함

라. 참고사항

- 외국인투자촉진법, 외국인투자지역운영 지침
 -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지원기준
-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및 동시행규칙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·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북도조례 및 관련법령제도 등이 개정됨에 따라 「구미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」의 지원기준 등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